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2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윤상현·김성원·박대수

윤영석 · 이헌승 · 유경준

안병길 · 소병훈 · 성일종

홍준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대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통하 여 대기업 및 이들의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 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여 벤처캐 피탈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 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되, 이들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안 제1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株式을 所有하는"을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금융업이나"를 각각 "금융업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투자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회사에 대하여 투자·융자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2.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 유한 회사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正去來委員會"를 "공정거래위원회" 로, "제11조"를 "제10조의4, 제11조"로, "施行"을 "시행"으로, "機關"을 "기관"으로,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를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로, "資料"를 "자료"로, "調査"를 "조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의2"를 "제10조의2, 제10조의4"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公正去來委員會"를 "공정거래 위원회"로,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1조"로, "違反行爲者"를 "위반행위자"로, "是正措置"를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申告"를 "신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 ① (생 략)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 (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 (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 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 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 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 법」에 따른 신<u>기술사업금융</u> 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 일반지주회사로 전화하거나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소유하는----. -----있다.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설>

3
.
1.•2. (현행과 같음)
3. <u>금융업 또는</u>
<u>-</u>
•
업 또는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會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는 제14조의2의 施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機 關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 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 來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부동산의 거래-----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 調査 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 융자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회사 2.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 | 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 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 의 確認要求등) 공정거래위원 의2, <u>제11조</u>, 제13조, 제14조 또 -----<u>제10조의4, 제11조-----</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국내계열회 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 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u></u>자료-----<u>조사</u>

1. ~ 4. (생 략)	1. ~ 4. (현행고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 누구	第15條(脫法行爲의
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	
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u>제10조의2</u> 또	
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	제10조의4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16條(시정조치 등) ① <u>公正去來</u>	第16條(시정조치・
<u>委員會</u> 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	<u>위원회</u>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	
3, 제9조, 제9조의2, <u>제10조의2,</u>	
<u>제11조</u> , 제11조의2부터 제11조	의2, 제10조의4,
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	
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	
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	
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1. ~ 4. (현행과 같음)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
제10조의2,
제10조의4
② (현행과 같음)
第16條(시정조치 등) ① <u>공정거래</u>
 위원회
<u> </u>
-1) 1 O -7
제10조
의2, 제10조의4, 제11조

말한다] 또는 <u>違反行爲者</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이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	----	----	----

②·③ (생 략)

<u>위반행위자</u>
시정조치
<u>신고</u>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